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199 제출연월일: 2024. 6. 28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선제적·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, 유관기관 지원·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,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

라. 각 유관기관 지원 · 협조 체제 구축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행 제3조(책무) ① (생 략) 제3조(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② -----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"재난 관리책임기관"이라 한다)의 장 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5. 가뭄대책 가. · 나. (생 략) 가.ㆍ나. (현행과 같음) 다.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다.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 및 물자 비축 한 가뭄 극복대책 라. 각 유관기관 지원·협조 <신 설> 체제 구축 마. (현행 라목과 같음) 라. (생 략) 6. ~ 9. (생략) 6. ~ 9.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생 략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32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의 확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의 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 포함된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

 책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

 여야 한다.